



# 시 보



제1621호 2023. 11. 23.(목)

## 공 고

○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##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23.

### 목 포 시 장

#### 1. 제안이유

-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함.
  - 제6조(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우선사용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.
-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의견으로 “우선사용”이라는 단어를 지양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제6조 제목인 “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” 을 “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홍보” 로 개정하고자 함.

3. 개정조례안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 영향 평가 검토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여부 검토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: 해당없음

6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: 2023. 11. 23. ~ 2023. 12. 13.(20일)

8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9. 의견제출

-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3일까지 목포시장(도시디자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89), 직접방문 등

※ 보내실 곳 : [우58613]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 (용당동) 목포시청 3층 도시디자인과(도시행정팀)

10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(☎061-270-343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우선사용)”을 “(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홍보)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.	제6조(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활성화 홍보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규칙명 :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